

2026. 10월 동성고 급식물품(부식류)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

2026년 9월 15일
동성고등학교장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한	납품장소
2026. 10월 동성고 급식물품(부식류) 구매	붙임 내역서 참조	49,420,200원	2026. 10. 1. ~ 10. 31.	동성고 식생활관

2. 전자견적 일정

-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 14:30 ~ 2026. 9. 21. 14: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 15:30 동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열람으로 같습니다.
※ 물품내역서 문의: 동성고등학교 (☎ 043-927-1933)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으로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임.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임.
다.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의 **대금결제**는 **현금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총복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로 하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 필한 자**
(※ 계약체결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서 1부 제출)

-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내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본고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미달로 판정되어 낙찰 대상에서 제외(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 2개의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에 의거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없는 자)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자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전자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성고 행정실(☎ 927-1933, 010-7317-7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인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불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충북교육청통합신고

5.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불입문서 참조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